

2025년도 개정판

만성콩팥병 환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복지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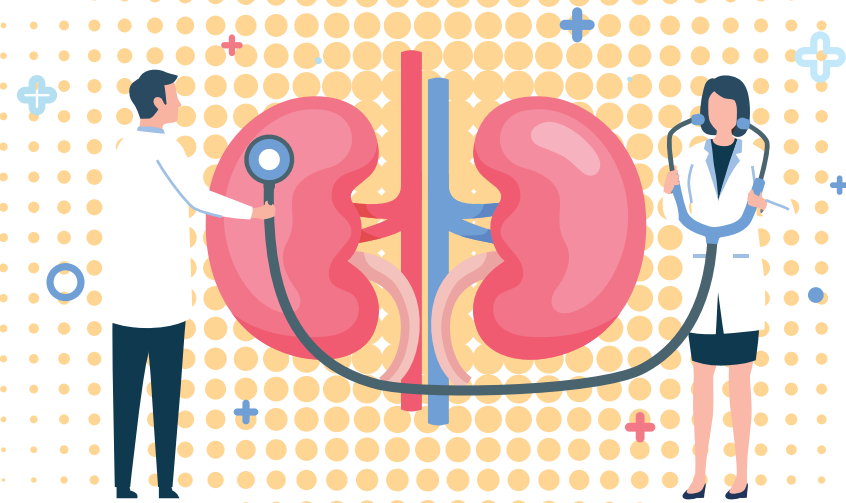
공편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사회사업팀 엄태준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사회사업팀 이수지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 사회사업팀 이세림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사회사업팀 김준영, 손성준

- 본 책에 수록된 정보는 2024, 2025년 기준으로 하며,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해당 자료는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www.kamsw.or.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책자의 저작권은 한림대학교의료원에 있습니다.

2025년도 개정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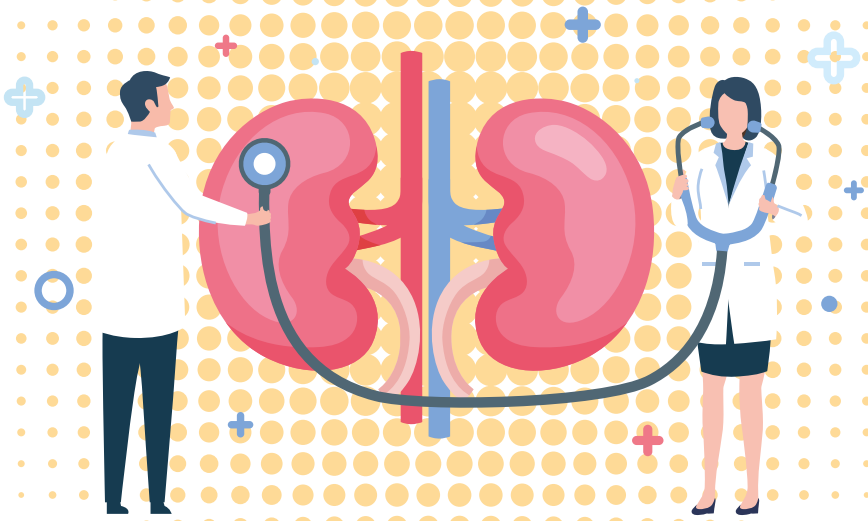
만성콩팥병 환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복지정보



2025년도 개정판

만성콩팥병 환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복지정보



한림대학교의료원 사회사업팀

담당 의료사회복지사 :

연락처 :



한림대학교의료원

HALLYM UNIVERSITY MEDICAL CENTER

한눈에 알아보는 복지 혜택

☑ 투석준비수술을 받았거나 투석치료를 시작했나요?



☑ 복지정보 한눈에 보기

내 용	지원사업	대 상
경제적 지원	보건소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 [P08]	건 차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P10]	건 차 기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사업 [P12, 23]	건 차 기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사업 [P14, 24]	건 차 기
	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사업 [P16, 25]	건 차 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P18]	건 차 기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P20]	건 차 기
돌봄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P34]	건 차 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P38]	건 차 기
	교통약자이동지원서비스 [P40]	건 차 기
	일상돌봄서비스 [P42]	건 차 기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P44]	건 차 기
	보건복지부 긴급돌봄 지원사업 [P46]	건 차 기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P48]	건 차 기
	119안심콜서비스 [P50]	건 차 기
장애 관련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P28]	건 차 기
	국민연금 내 장애연금 [P30]	건 차 기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P32]	건 차 기
일자리 지원	장애인 일자리사업 [P52]	건 차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P54]	건 차

* **건** 건강보험가입자, **차** 차상위 대상자, **기** 기초생활수급자

2025년도 개정판

만성콩팥병 환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복지정보

목차

I 치료비가 걱정돼요.

01. 건강보험 산정특례제도	06
02.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08
03.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10
04.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사업	12
05.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사업	14
06. 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사업	16

II 생계비가 걱정돼요.

0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8
02.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20
03.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22
04.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사업	23
05.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사업	24
06. 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사업	25

III 장애등록이 궁금해요.

01. 신장장애 등록	26
02.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28
03. 국민연금 내 장애연금	30
04.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32

IV 돌봄지원이 필요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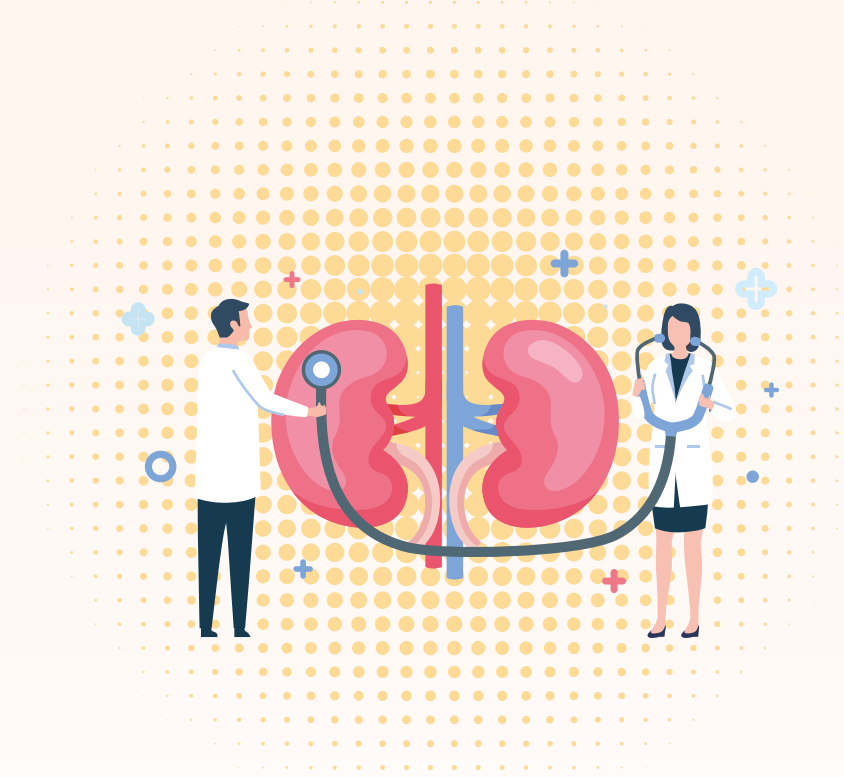
0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34
0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38
03. 교통약자이동지원서비스	40
04. 일상돌봄서비스	42
05.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44
06. 보건복지부 긴급돌봄 지원사업	46
07.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48
08. 119안심콜서비스	50

V 일 자리를 찾고 싶어요.

01. 장애인 일자리 사업	52
02.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54
03. 장애인 고용알선 지원사업	56
04.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사업	57
05.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58

VI 부록

01. 만성콩팥병(만성신장병)이란 어떤 상태를 말하나요?	60
02. 연명의료결정제도	62
03. 도움이 되는 사이트 정보	64



01. 건강보험 산정특례제도



중증난치질환으로 진단받은 건강보험 환자가 외래 또는 입원치료 시
요양급여부분 본인부담률을 20%에서 10%로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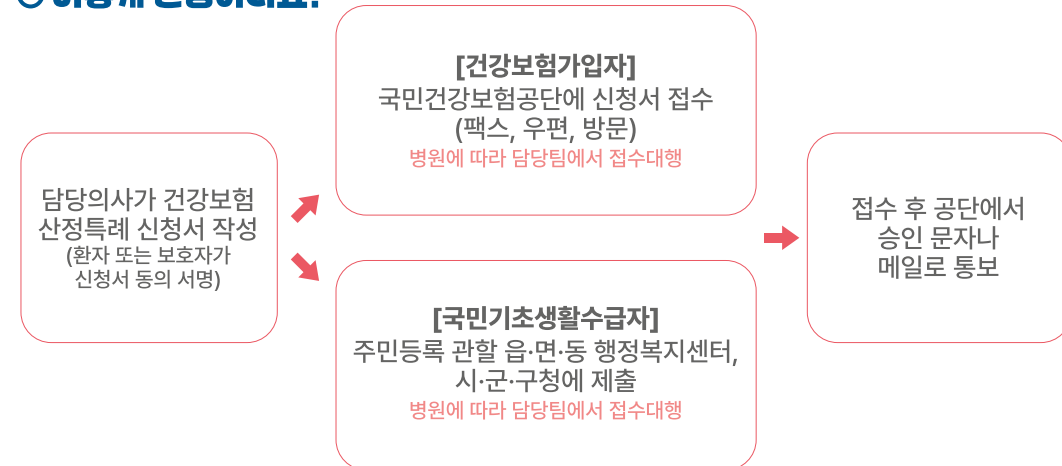
- 건강보험 가입자 중, 만성신장병(N18)을 진단 받고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는 자
- 혈액투석 및 복막투석 관련 외래 진료, 시술·수술과 관련된 외래 또는 입원 치료를 받은 자
* 투석 실시여부 관계없으며, 혈관 시술·수술을 시행한 외래진료 및 입원기간만 적용됨.
- 신장 이식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입원 치료 및 외래 치료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요양급여부분의 본인부담률이 20%에서 10%로 줄어듭니다. (단, 전액본인부담 및 비급여 항목제외)
예) 영수증에서 법정본인부담률 확인

항목	급여		전액본인부담	비급여
	일부본인부담	공단부담금		
	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적용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5년 뒤 갱신 필요)

- 중증난치질환으로 확진 후 30일 이내 등록 : 확진일부터 5년
- 중증난치질환으로 확진 일 30일 이후 등록 : 등록일부터 5년

많이 하는 질문과 답변

Q1 대리인도 산정특례 등록신청이 가능한가요?

A1 산정특례 등록신청 시 본인 서명이 필수입니다. 그러나 환자가 미성년 또는 중증 정신질환자 등의 경우 산정특례 등록 신청인의 법정대리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Q2 확진일 이전 검사비용도 산정특례 적용이 가능한가요?

A2 산정특례제도는 진단확진일 이후 발생하는 진료비를 경감하는 목적의 제도입니다. 따라서 진단 확진 이전 발생한 검사 및 진료비는 적용이 불가합니다.

Q3 산정특례 등록자는 모든 진료비에 대해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A3 산정특례로 등록된 질환 및 질환과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분명하다는 의사판단이 있는 합병증까지 적용됩니다. 또한 산정특례 인정 질환의 진료비 중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본인부담 항목만 해당됩니다. 전액본인부담, 2·3인실 입원료, 식대, 선별급여, 예비급여, 비급여항목은 특례혜택에서 제외됩니다.

Q4 산정특례 등록자로 특례 종료일이 일요일입니다. 휴일이므로 월요일까지 재등록 신청이 가능한가요?

A4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종료일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질환별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이 충족되는 경우 종료일 이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5 입원기간 중 확진된 경우 입원시작일부터 적용이 가능한가요?

A5 치료를 위한 입원(진단목적만을 위한 입원 제외)기간 중에 확진되어 입원기간 내(퇴원일 포함) 등록 신청했다면, 확진일과 상관없이 입원기간 전체에 대해 적용 가능합니다.

Q6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혈액투석을 위한 혈관 시술·수술진료비, 시술·수술 전 검사비도 산정특례 적용이 가능한가요?

A6 혈관 시술·수술을 시행한 외래 및 입원진료비만 적용 가능하며, 시술·수술 없이 검사 또는 처치만 있을 경우 산정특례 적용이 불가 합니다.

본인의 산정특례 등록내역 확인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 민원서비스 → 서비스 찾기 → 산정특례 등록 내역 조회
-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 앱 접속 : 전체메뉴(화면 왼쪽 아래) → 민원여기요 → 조회 → 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
- 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 : 본인의 신분증 지참 및 산정특례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공단서식) 제출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등 추가서류가 필요하므로, 유선상담 후 방문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문의하세요.

02.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속적인 치료로 의료비 부담이 많은 투석환자들에게 투석치료비와 합병증 치료비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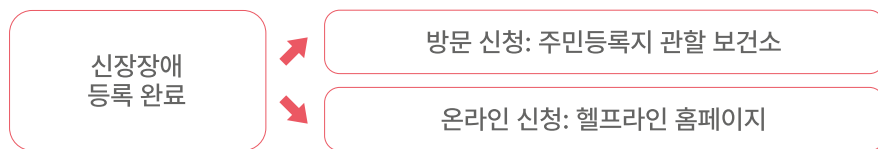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투석중인 만성신장병(N18) 환자로 신장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에 한함.
-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지원기준을 만족하는 환자

☑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만성신장병(N18)진단 및 산정특례 적용 후 발생하는 입원, 외래 진료비 중 요양급여의 본인부담금 10%
 - * 적용제외 : 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선별급여, 예비급여,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일반입원실의 2인실·3인실 및 정신과 폐쇄병실의 2인실·3인실을 이용한 경우 제외
- 만성신장병요양비 : 투석중인 만성신장병(N18) 환자로 처방전에 의해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 및 사용한 금액

☑ 어떻게 신청하나요? (연중 수시 접수 가능)



☑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 1)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확인서(해당자에 한함, 임대차계약서는 부양의무자가구에서도 해당자는 제출)
-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환자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3) 진단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받은 신규 진단서)
- 4) 지원대상자(환자 또는 보호자명)의 통장사본
- 5) 자동차보험계약서
- 6) 장애정도 확인 서류(장애인 등록증, 장애인 증명서 등)
 - * 부양의무자 서류는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담당자에게 전화로 문의하세요.

☑ 적용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소득·재산 정기재조사 2년마다 실시
- 구비서류 첨부하여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지원 신청일"로 간주
 "지원 신청일" = "지원 개시일" (지원 개시일 이전에 사용한 의료비는 소급지원 불가)

☑ 지원받을 수 있는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년도 환자, 부양의무자가구 소득재산기준 일람표]

(단위:원/월)

가구규모 / 지역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소득 기준	환자가구 (중위소득 140%)	3,348,818	5,505,721	7,035,494	8,536,882	9,951,469	11,290,727	12,583,799	
	부양 의무자 기준 (중위소득 200%)	4,784,026	7,865,316	10,050,706	12,195,546	14,216,384	16,129,610	17,976,856	
재산 기준	환자가구	서울	365,834,892	410,170,000	441,614,460	472,475,468	501,552,302	529,080,719	555,659,784
		경기	308,834,892	353,170,000	384,614,460	415,475,468	444,552,302	472,080,719	498,659,784
		광역·세종·창원	299,834,892	344,170,000	375,614,460	406,475,468	435,552,302	463,080,719	489,659,784
		기타	227,834,892	272,170,000	303,614,460	334,475,468	363,552,302	391,080,719	417,659,784
	부양 의무자 기준	서울	609,724,820	683,616,667	736,024,101	787,459,113	835,920,504	881,801,199	926,099,640
		경기	514,724,820	588,616,667	641,024,101	692,459,113	740,920,504	786,801,199	831,099,640
		광역·세종·창원	449,724,820	573,616,667	626,024,101	677,459,113	725,920,504	771,801,199	816,099,640
		기타	379,724,820	453,616,667	506,024,101	557,459,113	605,920,504	651,801,199	696,099,640

- * 혈우병, 고혈병, 파브리병, 뮤코다당증은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상이하므로 보건소에 문의하세요.
- * 8인 이상 가구의 소득 및 재산기준은 보건소에 문의하세요.
- *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환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 * 부양의무자가 여러 가구인 경우 가구를 합산하지 않으며, 각각 산정합니다.



☑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03.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질병·부상 등으로 가구의 부담 능력을 넘어서는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경제적 문제로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질환기준 : 입원·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 합산 지원
- 소득 및 재산기준

1)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단위:원/월)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직장가입자	85,040	139,820	179,420	219,200	252,210
지역가입자	20,030	70,930	123,230	156,740	198,880

* 직장가입자(피부양자)는 보수 외 소득이 있는 경우 보험료로 환산하여 합산

2) 재산기준: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 7억원 이하

- 의료비 부담수준

소득수준	의료비부담수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1인 가구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20만원 초과 시
	2인 이상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원 초과 시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가구 연소득의 10% 초과 발생 시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가구 연소득의 20% 초과 발생 시 "개별심사"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란? 급여 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 항목

* 개별심사제도 : 소득재산 수준 또는 질환의 특성이 기준을 다소 초과 하거나 못 미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환자를 추가적으로 돕기 위한 제도

* 가구의 소득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른 월 건강보험료로 판정

* 그 외 소득 구간별 의료비 발생 수준에 따라 지원신청 기준이 상이하므로 공단에 의료비 부담수준을 확인 필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일수 : 최종진료일 이전 1년 이내 진료 건 중 입원·외래 진료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 (투약일수 제외)
- 지원금액 : 연간 5천만원 한도 내 소득수준별 차등 지원

소득수준	의료비 지원 비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80%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70%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60%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개별심의 필요)	50%

- 지원금 계산 : [본인부담의료비(예비·선별급여, 병원2·3인실 입원료 등+전액본인부담금+비급여) - (지원제외항목+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금+실손보험금 등)] X 50~80%
- 지원 제외항목 : 미용·성형, 특·1인실이용료, 간병비, 한방첩약, 다빈치료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제증명수수료 등(자세한 지원제외항목은 신청 전 확인 필요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신청기한
환자(또는 대리인)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퇴원일(최종진료일)의 다음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민원서비스 → 모의계산 → 재난적의료비 모의계산기(지원도움미) 통해 지원 대상 여부 확인 가능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병원에서 준비 할 서류	개인별로 준비 할 서류
1) 진단서 2) 입(퇴)원 확인서 또는 통원 확인서 3) 진료비(약제비) 계산서·영수증 4)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포함) 세부내역	1) 신분증(환자)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환자기준 발급) 3) 민간보험 가입(계약) 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 대리 신청을 할 경우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환자) 신분증 사본
- 서류 준비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 필요서류를 확인 필요



-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문의하세요.
- ✓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세요.

04.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사업



갑작스러운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해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투석을 시작하기 위해 동정맥루, 복막투석 도관 삽입수술을 받는 환자 중 지원기준에 적합하면 수술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구구성원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고려

1)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원/월	1,794,010	2,949,494	3,769,015	4,573,330	5,331,144	6,048,604

*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 마다 692,717원씩 추가(7인 가구 6,741,321원)

2) 재산 기준 : 지역별 일정 금액 이하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금액(만원)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24,100 (~31,000)	15,200 (~19,400)	13,000 (~16,500)

*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 '군' 포함), 특례시 / 중소도시 :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 농어촌 : 도의 '군'

3) 금융 기준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액(원)	8,392,000	9,932,000	11,025,000	12,097,000	13,108,000	14,064,000

* 7인가구 이상은 1인 증가 시 마다 924,000원 추가

☑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이 결정된 질병에 대한 입원에서 퇴원까지 검사, 치료에 소요된 비용을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단기 지원 원칙에 따라 1회만 지원 가능함.
- 단, 1회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 추가연장 지원이 가능하며 동일 상병이라도 부위가 다르거나 지원종료 후 2년경과 시 재지원 가능함.
- 만성질환자와 기초의료급여 수급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됨.
* 만성질환자는 예외적으로 갑자기 악화되어 긴급히 진료가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 기초의료급여수급자는 수술 또는 중환자실 이용 등 긴급한 사유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지원 가능
- 개인 사보험 가입자의 경우, 해당 보험사로부터 수령 또는 수령할 보험금액을 차감한 의료비만 지원함.
- 지원 제외 항목 : 간병비, 의료소모품 구입비, 보조기 또는 의료기기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식대, 구급차 이용료, 비급여 도수치료비·증식치료비, 추나요법, 비급여식대, 비급여 입원료(특실 및 1인실 비용*)
* 감염예방을 위해 1인실 사용이 불가피함이 진단서 상 명시 된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가능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병원발급 : 입원진료비내역서, 진단서, 재원확인서 또는 입원확인서
- 개별준비 : 통장거래내역서, 주거서류
- 해당자에 한해 : 부채증명서, 근로원천징수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 준비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니 사전에 문의하고 신청하세요.



- ✓ 보건복지 상담센터(129)에 문의하세요.
- ✓ 주민등록 관할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세요.

05.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였으나 기존의 법과 제도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서울시 거주지 등록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당면한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치료비 마련이 곤란한 가구
 - * 위기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급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 상실한 경우
중환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방임, 유기 및 학대, 가정폭력, 실직, 화재 등

1) 소득 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원/월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2) 재산 기준 : 4억 900만원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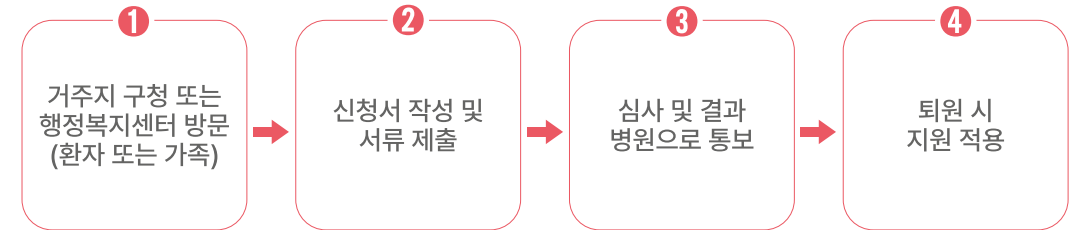
3) 금융 기준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액(원)	12,392,000	13,932,000	15,025,000	16,097,000	17,108,000	18,064,000

☑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최대 100만원 범위 내에서 병원 응급진료비, 수술비, 약제비, 본인부담금 등에 대하여 지원
- 지원횟수 : 1년에 1회 원칙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병원발급 : 진단서, 재원확인서 또는 입원확인서, 진료비내역서
- 개별준비 : 통장거래내역서, 주거관련 서류(임대차계약서)
- 해당자에 한해 : 부채증명서, 근로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 준비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니 사전에 문의하고 신청하세요.



- ✓ 서울시 다산콜센터(02-120)에 문의하세요.
- ✓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청에 문의하세요.

06.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경기도 거주자로 위기상황에 해당 되는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경우 의료비 지원을 통해 위기 가정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만성신부전으로 입원 또는 수술이 필요한 환자 중 지원 대상 기준에 적합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 신청일 기준 경기도 내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제 거주자에 한함.
- 만성질환자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됨.
 - * 만성질환자는 예외적으로 갑자기 악화되어 긴급히 진료가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 국민기초 생계 및 의료급여 대상자는 중한질병 및 부상으로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지원 가능

1) 소득 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원/월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 7인 이상은 1인 증가 시마다 923,623원씩 증가

2) 재산 기준 : 특례시 37,200만원 이하 / 시 31,000만원 이하 / 군 19,400만원 이하

3) 금융 기준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액(원)	14,392,000	15,932,000	17,025,000	18,079,000	19,108,000	20,064,000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의료비	- 1회 300만원 이내의 비급여 항목 지원 (항암치료비는 100만원이내 지원) - 환자 진료비 영수증의 전액본인부담금, 선별급여, 본인 기본 식대는 지원 가능 (의료기구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비급여 도수치료비 등 지원 불가)
간병비	- 긴급복지, 경기도형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 대상자 중 입원기간에 발생한 유료간병비를 동일상병 1회,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간병비만을 목적으로 지원 불가함. 다만, 중한 질병으로 산정특례나, 의료급여 등으로 지원받아 긴급복지지원 대상이 되지 않지만, 간병비 부담이 심하여 지원이 필요할 경우 시군에서 적정성을 판단하여 지원가능

- * 의료비 지원 대상자가 입원 및 수술 후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여 요양·재활병원 등으로 치료연장을 위해 이송 되는 경우 최대 3개월 이내 발생한 요양 및 재활치료비를 의료비지원 금액한도 범위 내 지원 가능(간병비 지원 불가)
- * 10만원 미만(간병비 제외) 소액 의료비 지원 불가(항암치료비 지원대상자는 소액 의료비 지원 제한 없이 100만원 범위 내 3회까지 신청 가능)
- * 지원종료시점 1년 경과 후 동일 질병에 대해 재신청 가능
- * 의료비 지원 대상 기준에 해당할 경우, 퇴원 전 또는 퇴원 후 30일 이내에 신청 가능(단, 퇴원 후 신청할 경우에는 소득, 재산 등 사후 조사를 실시한 후 지원(중복·부정 수급 방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병원발급 : 입원진료비내역서, 진단서, 재원확인서 또는 입원확인서
- 개별준비 : 통장거래내역, 주거서류
- 해당자에 한해 : 부채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 준비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니 사전에 문의하고 신청하세요.



- ✓ 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010-4419-7722), 경기도 콜센터(031-120)에 문의하세요.
- ✓ 주민등록 관할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세요.

0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 국가가 생계, 의료, 교육, 주거, 자활 등의 필요한 지원을 통해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 대상: 근로능력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 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원칙적으로 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로 보장함)

- 선정 기준

(단위:원/월)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765,444	1,258,451	1,608,113	1,951,287	2,274,621	2,580,738	2,876,297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956,805	1,573,063	2,010,141	2,439,109	2,843,277	3,225,922	3,595,371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1,148,166	1,887,676	2,412,169	2,926,931	3,411,932	3,871,106	4,314,445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1,196,007	1,966,329	2,512,677	3,048,887	3,554,096	4,032,403	4,494,214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구분	지원내용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 지급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기관 등을 이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상급종합병원)	약국	PET 등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 * 급여항목의 전액본인부담, 비급여의 발생금액은 전액본인이 납부해야 함 선별급여의 경우 급여항목별로 30~90% 본인이 부담해야 함							

구분	지원내용
주거급여	임차가구 : 최저주거기준 고려하여 지역별, 가구원수별로 산정한 임차급여 지급(현금) 자가가구 : 가구원수, 소득, 유지소요액, 주택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 지급(현물)
교육급여	초·중·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바우처 지원 고등학생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금에 대해 학교로 직접 지급
해산급여	수급자가 출산(예정) 시 1인당 70만원 지급(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장제급여	수급자 사망 시 80만원을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단,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지급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 등을 조사하여 시·군·구청장이 최종 지원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청주체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이 신청
조사내용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건강상태 및 가구특성, 부양의무자 관련 사항 등
처리기한	신청일로부터 30일(토·일·공휴일 제외)

- * 친척 및 기타 관계인은 위임장을 준비해 주세요.
- * 소득·재산 등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신청서식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
-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해당서류
- * 신청하는 급여 종류에 따라 준비서류가 다르므로 반드시 문의 후 준비



- ✓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세요.
- ✓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세요.

02.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 아동 중 세대의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 하는 본인부담금을 경감해 주는 사업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 대상

- 1) 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중증질환자
: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자
- 2) 만성질환자
: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 3) 18세 미만인 자(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
*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 20세가 도래하기 전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 (기 책정되어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적용을 받고 있던 대상자에 한해 인정)

- 선정 기준

- 1)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원/월	1,196,007	1,966,329	2,512,677	3,048,887	3,554,096	4,032,403	4,494,214

- 2)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건강보험료 지원: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전액 국고지원

- 요양급여 비용 본인부담 경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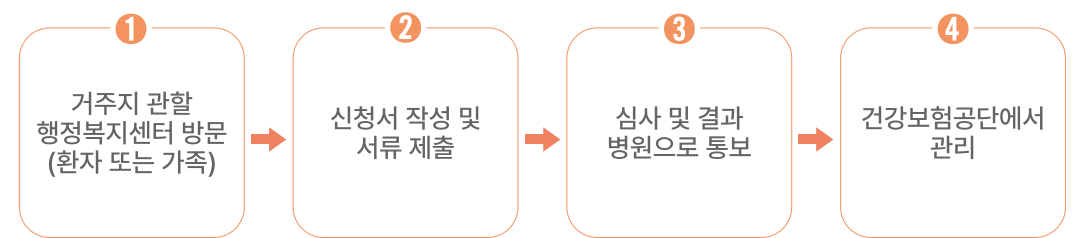
구분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일반건강보험가입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	입원외래	요양급여비용의 5%(중증), 10%(희귀) 식대의 50%
	65세 이상 노인틀니	요양급여비용의 30%
	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의 30%
	추나요법*	요양급여비용의 50%

구분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일반건강보험가입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만성질환자 18세미만인자	입원	요양급여비용의 20% 식대의 50%
	외래	요양급여비용의 30~60%
	65세 이상 노인틀니	요양급여비용의 30%
	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의 30%
	심·뇌혈관 질환자	요양급여비용의 5% 식대의 50%
추나요법*	요양급여비용의 50%	

* 상급종합병원 입원병실 중 일반입원실 및 정신과 입원실의 2인실·3인실·4인실 입원료의 본인일부부담률은 각 50%·40%·30%이며, 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인 요양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요양병원으로 한정)·정신병원 입원병실 중 일반입원실 및 정신과 입원실의 2인실·3인실의 경우는 각 40%·30%를 부담(일반 건강보험가입자와 동일)

* 복잡추나 중 디스크, 협착증 외 근골격계 질환인 경우에는 본인부담률 80% 적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대상자 별 준비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니 사전에 문의하고 신청하세요.



✓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세요.

03.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서울시 거주자 중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을 초과하여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비수급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일 현재 서울시 거주자로 소득·재산기준이 동시 충족하는 자

1) 소득기준 : 기준 중위 소득 48% 이하

가구 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원/월	1,148,166	1,887,676	2,412,169	2,926,931	3,411,932	3,871,106

2) 재산기준 : 1억 5천 5백만원 이하(일반재산 + 자동차 + 금융재산 - 부채) 주거용 재산(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등) 포함 시 2억 5천 4백만원 이하 만 19세 미만 자녀 양육가구의 경우 자녀 1인당 금융재산 최대 1,000만원 추가 공제

- ※ 선정 제외
- 금융재산 3천6백만원 초과자
 - 재산의 소득환산율 월 100% 적용 자동차 소유자
 -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 1.3억원), 고재산(12억원)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급여	월 127,580원 ~ 382,730원	월 209,750원 ~ 629,230원	월 268,020원 ~ 804,060원	월 325,220원 ~ 975,650원	월 379,110원 ~ 1,137,320원	월 430,130원 ~ 1,290,370원
해산급여	1인당 70만원 (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만원 추가지급)					
장제급여	1인당 80만원					

☑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 본인, 친족 및 기타관계인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서울시 다산콜센터(02-120)에 문의하세요.
- ✓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세요.

04.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사업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의 위기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위기가정에 단기간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중, 소득·재산기준에 해당하는자

1) 소득기준 : 기준 중위 소득 75% 이하

가구 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원/월	1,794,010	2,949,494	3,769,015	4,573,330	5,331,144	6,048,604

※ 7인 이상은 1인 증가 시 마다 692,717원씩 증가

2) 재산기준

지 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금액(만원)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24,100 (~31,000)	15,200 (~19,400)	13,000 (~16,500)

※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 '군' 포함), 특례시 / 중소도시 :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 농어촌 : 도의 '군'

3) 금융재산 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액(원)	8,392,000	9,932,000	11,025,000	12,097,000	13,108,000	14,064,000

※ 7인 이상은 1인 증가 시 마다 924,000원씩 추가

☑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3개월 간 (1개월 단위 3회 지급) 현금 또는 맞춤형 물품(서비스) 제공
- 3개월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 되는 경우 심의를 거쳐 3개월 범위 내 연장지원 가능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원/월	730,500	1,205,000	1,541,700	1,872,700	2,186,500	2,485,400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89,700원씩 추가지급



- ✓ 보건복지 상담센터(129)에 문의하세요.
- ✓ 주민등록 관할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세요.

05.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서울시 거주자 중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의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 생계비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안정적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 * 위기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급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방임, 유기 및 학대, 가정폭력, 화재 등

1)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원/월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 7인 이상은 1인 증가 시 마다 692,717원씩 증가

2) 재산 기준: 4억 900만원 이하

3) 금융 기준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금액(원)	12,392,000	13,932,000	15,025,000	16,097,000	17,108,000	18,064,000

☑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원/월	730,500	1,205,000	1,541,700	1,872,700	2,186,500	2,485,400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 마다 289,700원씩 추가 지급

- 원칙적으로 연 1회 지급되지만, 위기상황이 계속 추가되면 1회 추가 지원 가능
- 고독사 위험 가구는 최대 3회까지 지원 가능



- ✓ 서울시 다산콜센터(02-120)에 문의하세요.
- ✓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청에 문의하세요.

06.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경기도 거주자 중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 가구에 단기간 생계비를 지원함으로써 위기 가정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위기상황에 처했지만, 현행 법제도의 지원이 어렵거나, 지원을 받아도 위기상황을 벗어나는데 미흡함이 있는 위기가정
- 6개월 이상 경기도 거주자로 소득, 재산, 금융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소득 기준: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원/월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 7인 이상은 1인 증가 시 마다 692,717원씩 증가

2) 재산 기준: 특례시지역 37,200만원 이하 / 시지역 31,000만원 이하 / 군지역 19,400만원 이하

3) 금융재산 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액(원)	14,392,000	15,932,000	17,025,000	18,097,000	19,108,000	20,064,000

☑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3개월 간 (1개월 단위 3회 지급) 현금 또는 맞춤형 물품(서비스) 제공
- 3개월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 되는 경우 추가로 3개월 범위 내 지원 가능
- 보건복지부 긴급생계비지원을 6개월 받는 경우 경기도형 긴급생계비지원은 3개월만 지원 가능 (3개월 연장 불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원/월	730,500	1,205,000	1,541,700	1,872,700	2,186,500	2,485,400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89,700원씩 추가지급



- ✓ 경기도 콜센터(031-120)에 문의하세요.
- ✓ 주민등록 관할 시·군·구청, 읍·면·동의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 담당부서에 문의하세요.

01. 신장장애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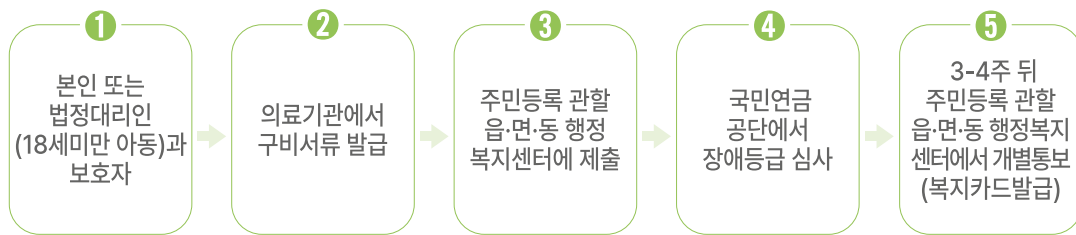


신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 이식수술을 받은 대상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성신장병으로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
- 신장을 이식받은 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진단가능기관: 장애진단지정기관 중 장애등록 직전 3개월 이상 투석치료 받은 병원의 (해당 의사 없을 경우 직전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투석받은 병원 의사), 신장이식 시술하였거나 이식환자를 진료하는 병원의 외과 또는 내과전문의
- 등급재조정: 매 4년마다 재판정(심한 장애), 이식의 경우 재판정 제외
3회 재판정하는 동안 장애정도의 변화가 없는 경우 영구장애 인정
- 외국인 및 재외동포 장애등록허용 자격: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F-4), 한국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F-2 중 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

☑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병원발급 1)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진단명(만성신장병), 최초투석일,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지 기재
2) 진료기록지: 1개월에 1회의 투석기록지로 만 3개월분
신규복막투석장애인은 투약처방기록(투석액 표기)이 필요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에 진단명, 최초 투석일, 투석기간이 명시되면 진료기록 생략 가능
※ 신장이식을 받은 자는 신장이식수술 내용 기재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이식 수술기록지만 제출
- 개별준비: 주민등록증, 도장, 반명함사진(3.5x4.5cm) 1장
(주민행정시스템 동의자의 경우 사진 제출할 필요 없으나, 필요 시 사진 제출)
(해당자에 한해)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혼인증빙서류,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난민인정증명서

☑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2024년 기준)

구분	지원내용
연금·수당	1. 장애인연금 2.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수당 3. 장애아동 양육수당 등
교육·보육	1. 장애아 보육료 지원/여성장애인 교육지원/장애인 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2. 장애인 정보화교육 3.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서비스 4. 자녀 및 형제자매의 어린이집 우선입소 등
의료·재활 지원 및 서비스	1. 장애인 의료비지원 2. 장애인 등록 진단서 발급비 및 장애등록 검사비 지원 3.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4.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장애인 보조기기 건강보험 급여(의료급여) 적용 5. 기초수급자 출산비용 지원 6. 장애인 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7.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8.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및 심판청구 비용지원 9. 공동주택 특별분양 알선/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10.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등
공공요금 등	1. 차량구입 시 도시철도 채권 구입 면제 2. 고궁, 능원, 국공립 박물관/미술관/공원/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감면 3.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4. 철도도시철도 요금 감면 5. 유선통신 및 이동통신 요금 감면 6. 시·청각 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및 시·청각 장애인용 TV 보급 7. 장애인방송 시청 지원 8. 항공요금 할인(항공사 자율할인 제도) 9. 연안여객선운임 할인 10. 고속도로통행료 할인 11. 전기요금 할인 12. 도시가스요금 할인 13. 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등
세제혜택	1.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2.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지방세 감면 3. 차량 구입 시 지역개발 공채 구입 면제 4.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 신고 시 공제혜택(장애인의료비·특수교육비·보험료 공제) 5. 소득세 공제 등

* 위 내용은 '2024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장애정도 및 소득, 재산 등에 따라 지원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정보는 장애심사결과 통지 시 받는「장애인 복지서비스 안내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등록 혜택안내



☑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세요.

02.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구분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지원 대상자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18세 이상인 자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 (중전1급, 2급 및 3급중복)	장애인연금법 상의 경증장애인 (중전3~6급)
수급자격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38만원, 부부가구 220.8만원 이하인 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3급 중복장애란? 3급+4,5,6급 (3급 중복장애가 아닌 경우 : 4급+4급 → 3급이 된 자)
* 장애인 등록한 '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는 장애인연금 지원 가능(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인은 제외)

☑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1) 장애인연금

(단위: 원)

구분	합계		기초급여		
	18세~64세	65세 이상	18세~64세	18세~64세	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432,510	432,510	342,510	90,000	432,510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422,510	80,000	342,510	80,000	80,000
차상위초과	372,510	50,000	342,510	30,000	5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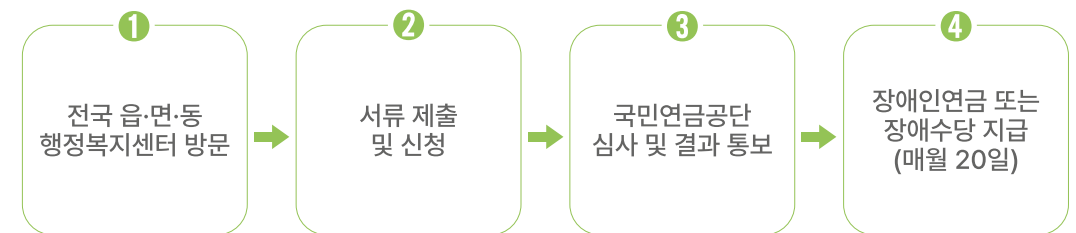
* 65세 이상은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지급됩니다.
* 부부(2인)가구의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에 20% 감액
예) (342,510원 x 80%)-8원(원단위절삭) = 274,000원(1인기준)

2) 장애수당

구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보장시설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수당	60,000원	30,000원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 불필요, 주거·교육·차상위계층은 신청 필요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개별 준비 : 신분증(환자, 대리인), 통장사본(환자), 위임장(대리 신청의 경우)
* 대리인 자격 :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세요.

03. 국민연금 내 장애연금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남았을 때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 지급되는 연금급여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 중 60세 이전 국민연금법 기준 신장장애등급을 받은 대상자
 - 1) 만성신장병으로 응급투석을 포함한 최초 투석 및 이후 지속적인 투석치료를 처음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경과한 대상자
 - 2) 신장 이식 수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대상자
 - *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대상자 제외
 - * 국민연금 지급연령에 따라 신청 기준이 상이함으로 확인 필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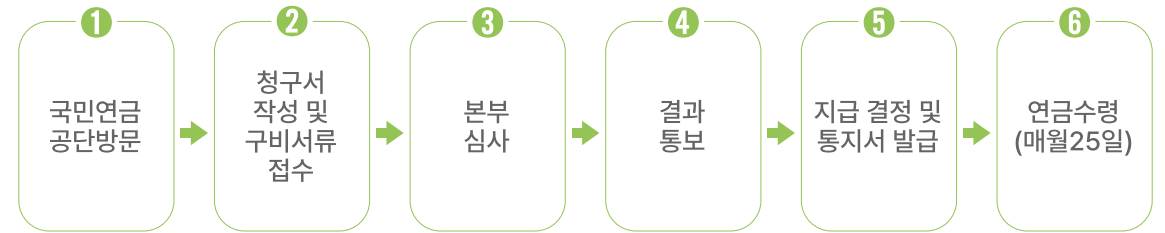
- 장애등급, 가입기간, 가입기간 중 소득월액평균 등을 고려하여 연금액 산정
- 질병이나 부상의 완치일을 기준으로 노동력 손실 또는 감소 정도에 따라 1-4급으로 결정

수급요건	장애등급	장애등급 기준	급여수준
완치 후에도 장애가 있는 자	1급	혈청 크레아티닌 농도 10mg/dl 이상이고 혈색소량, 알부민, 칼슘과 인의 곁 중 두 개 이상의 검사결과가 기준에 해당하는 자	기본연금액 100% + 부양가족연금액
	2급	- 혈청 크레아티닌농도 7mg/dl 이상인자 - 지속적으로 투석치료를 받는 자	기본연금액 80% + 부양가족연금액
	3급	혈청 크레아티닌농도 4mg/dl 이상인 자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4급	신장을 이식받은 자	기본연금액 225% (일시보상금)

- 국민연금법상 장애등급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구분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상의 장애급여와는 목적이 상이합니다. 그러므로 장애인 등록증만으로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 장애연금 수급자에게 다시 장애연금을 지급해야 할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후의 장애를 병합하여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합니다.
- 또한 기존의 장애가 악화 될 시, 수급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장애연금액을 변경청구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전국 국민연금공단지사 어디서나 가능하며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신청에서 결과까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1일 내 완료
(평일기준, 자료보완 및 직접진단에 따른 추가 소요시간은 심사처리 기간에 산입되지 않음)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병원발급
 - 1)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국민연금 장애심사 규정서식)
 - 2) 국민연금(신장 장애) 소견서(국민연금 장애심사 규정서식)
 - 3)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초진시점 신청자 한하여)
 - * 신장기능검사(혈청크레아티닌, 사구체여과율 등 혈액검사지) 및 투석 횟수를 확인
 - * 심사 중 추가자료 보완 또는 재검사요청이 있을 수 있음.
- 개별준비
 -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사회복지카드)
 - * 구비서류는 지사 장애연금 담당자와 상담 후 준비



국민연금공단(1355)에 문의하세요.

04.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장애인들의 신체, 가사, 사회활동 등 필요한 활동을 지원하여
자립생활을 돕고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6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산출된 종합점수가 42점 이상인 자
-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자
- 65세 미만으로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사람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되었으나 장기요양급여 인정등급을 포기한 자

- ※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 지원제외대상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 의료기관에 60일 초과하여 입원 중인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단기거주시설 등)에 입소한 사람
 - 가사간병방문지원, 장애아가족양육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재가돌봄서비스 등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

☑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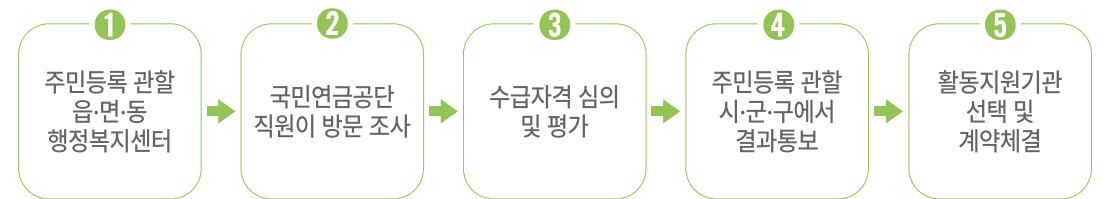
- 월 한도액 : 활동지원급여 구간별 월 1,000,000원 ~ 7,980,000원
- 특별지원급여 : 출산, 자립준비, 보호자 일시 부재의 생활환경에 따라 월 335,000원 ~ 1,332,000원 최대 6개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원

구분	본인부담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면제
차상위계층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2만원
가구별 소득수준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의 4~10% 차등 부담	- 활동지원급여 : 40,000원 ~ 209,200원 - 특별지원급여 : 면제

☑ 활동지원서비스에는 무엇이 있나요?

신체활동지원	개인위생관리, 신체기능유지 증진(처치보조, 체위변경, 복약보조), 식사도움, 실내이동 도움 등
가사활동지원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등 ※ 수급자 외의 가족의 가사활동지원은 포함하지 않으나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
사회활동지원	등하교 및 출퇴근 이동보조, 외출 동행, 의사소통서비스 등
방문목욕	가정방문 목욕제공
방문간호	간호, 진료, 요양상담, 구강위생 등
정서지원	정서지원 서비스
그 밖의 제공서비스	수급자 자녀의 양육보조(만 6세 이하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함),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위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 기록

☑ 어떻게 신청하나요?



※ 활동지원기관은 주민등록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거나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장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복지카드 포함)
- 본인 명의 통장사본(본인부담금 환급용)
- 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산정,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등)
-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증명서(해당자 한함)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대리인 : 친족 및 기타 관계인)



☑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세요.

0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환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가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환을 가진 자'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	항목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u>전적으로</u>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장기요양인정 점수 95점 이상)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u>상당 부분</u>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장기요양인정 점수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u>부분적으로</u>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장기요양인정 점수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u>일정 부분</u>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장기요양인정 점수 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	<u>치매환자</u>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 45점 이상 51점 미만)
인지지원등급	<u>치매환자</u>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 45점 미만)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급여내용	지원내용	본인부담금	
시설급여	요양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제공	- 일반 20% 부담 - 40%감경대상자 12%부담 - 60%감경대상자 8%부담 - 국민기초수급권자: 면제	
재가급여	주·야간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제공	- 일반 15% 부담 - 40%감경대상자 9%부담 - 60%감경대상자 6%부담 - 국민기초수급권자: 면제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장기요양요원이 1-5등급 치매수급자에게 인지자극활동, 잔존기능유지를 위해 일상생활을 수급자와 함께 수행하며 훈련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 및 장비를 이용하여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방문간호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가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구강위생 등 지원	
	단기보호	수급자를 월 9일 이내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등을 제공	
기타재가급여 (복지용구)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 또는 대여 * 수동휠체어, 전동·수동침대, 목욕리프트, 욕창방지 매트리스·방석, 이동욕조, 성인용보행기 등 * 1인당 160만원/년(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수급자가 섬·벽지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지급액 : 월 233,400원 기타재가급여와 중복수급 가능)		

* 수급자로 인정을 받은 분은 장기요양인정서가 도착한 날부터 서비스 이용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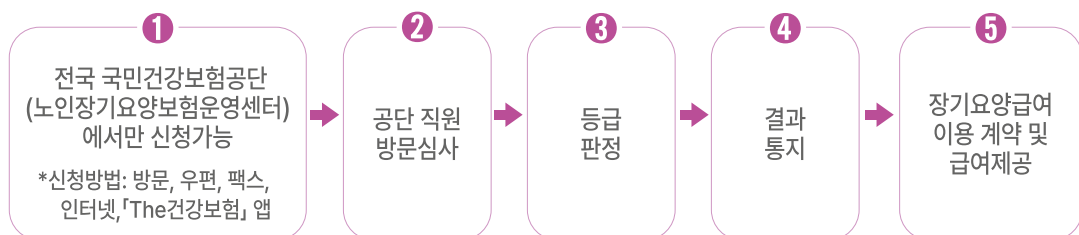
* 수급자가 자율적으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급여계약 체결 후 시설 및 재가 장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등급별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재가급여				주·야간 보호급여
장기요양 가족 휴가제 (중증 수급자)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장기요양 가족 휴가제 (치매가 있는 수급자),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 장기요양 가족 휴가제: 가정에서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모든 1·2등급 수급자와 치매가 있는 3~5등급 및 인지지원 등급 수급자는 단기보호급여 연간 10일 또는 종일 방문요양급여를 연간 20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 한정 치매안심센터의 장),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자
 * 등급판정 소요기간: 신청인이 신청서 제출한 날부터 30일 소요

🔗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① 65세 이상 노인: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장기요양의사소견서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사소견서는 공단직원이 방문조사를 한 이후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받은 경우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자: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장기요양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할 때 노인성 질병이 기재된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의사소견서 대신 진단서 등을 제출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공단 직원의 안내에 따라 의사소견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기 요양급여 이용 계약은 어떻게 하나요?

- 적절한 급여를 이용하기 위해 수급자에게 맞는 장기요양기관을 찾아 계약을 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 검색서비스 →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전국 장기요양기관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지역별, 급여종류별, 기관 명칭별 검색 및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확인 가능
 * 평가등급 표기: A(최우수), B(우수), C(양호), D(보통), E(미흡)
- 게시된 정보가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니 유선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 최소 2년이며 갱신 신청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4년
장기요양 2등급~4등급의 경우	3년
장기요양 5등급,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2년

• 갱신신청

- 장기요양수급자로 결정되더라도 유효기간까지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지속적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유효기간 종료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 갱신 신청의 경우 유선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신청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장기요양 인정자의 심신 상태에 변화가 있어 현재 등급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등급 갱신 신청기간이 아니더라도 등급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장기요양기관 찾기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세요.

0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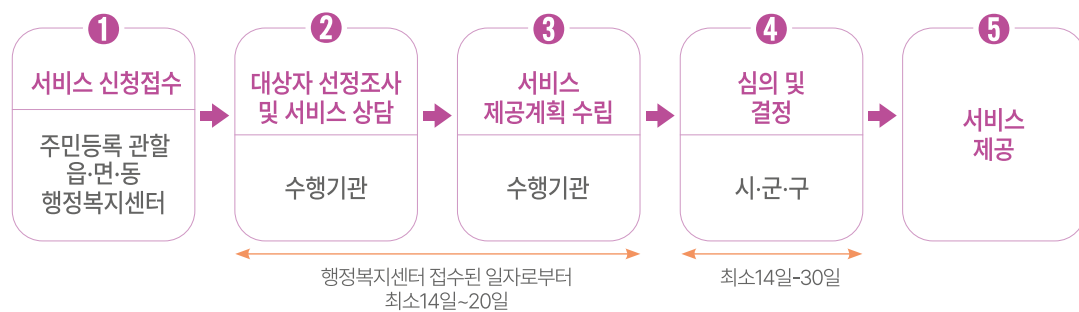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 1)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2)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3)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 * 사후관리는 유사중복사업 자격과 관계없이 제공 가능
- * 특화서비스는 실제 서비스 이용 인원의 30% 이내에 유사중복사업 자격자에게 서비스 제공 가능
- * 유사중복사업 자격 해당자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국가보훈부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 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인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자격이 있는 노인, 노인의 친족, 이해관계인 및 수행기관, 주민등록관할 읍·면·동 공무원

☑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서, 신청자의 신분증,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

☑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 서비스 및 연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별 돌봄욕구·필요정도에 따라 서비스 내용, 제공시간, 제공주기 등이 결정됩니다.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직접 서비스 (방문·통원 등) *4개분야	안전지원	▶ 방문 안전지원	- 안전·안부확인 - 정보제공(사회·재난안전,보건·복지정보제공) - 생활안전점검(안전관리점검, 위생관리점검) - 말벗(정서지원)
		▶ 전화 안전지원	- 안전·안부확인 - 정보제공(사회·재난안전,보건·복지정보제공) - 말벗(정서지원)
		▶ ICT 안전지원	- ICT 관리·교육 - ICT 안전·안부확인
	사회참여	▶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 여가활동 - 평생교육활동 - 문화활동
		▶ 자조모임	- 자조모임
	생활교육	▶ 신체건강분야	- 영양교육·보건교육·건강교육
		▶ 정신건강분야	- 우울예방프로그램 - 인지활동프로그램
	일상생활지원	▶ 이동활동지원	- 외출동행
		▶ 가사지원	- 식사관리 - 청소관리
	연계서비스 (민간후원자원)	▶ 생활지원연계	- 생활용품 지원 - 식료품 지원 - 후원금 지원
▶ 주거개선연계		- 주거위생개선 지원 - 주거환경개선 지원	
▶ 건강지원연계		- 의료연계 지원 - 건강보조 지원	
▶ 기타서비스		- 기타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연계	
특화서비스		- 개별 맞춤형 사례관리 - 집단활동 - 우울증 진단 및 투약지원	



✓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세요.

03. 교통약자이동지원서비스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를 위해 특별 교통수단 운영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휠체어 이용자
- 65세 이상의 고령자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휠체어 이용자
- 그 밖에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 중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 일시적 장애가 있는 경우 '휠체어 사용이 없는 이동이 어려운 자' 및 '치료기간'이 명시된 진단서를 통해 특별교통수단 이용이 필요하다고 소명하면 신청 가능(지자체별로 상이함).

☑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차량 운영을 통해 외출보조, 병원이용 등 각종 이동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의거한 교통약자이동지원서비스(장애인콜택시, 바우처 택시 등)는 각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대상자, 구비서류, 이용요금 및 관외이동 등 지원 기준과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사전에 문의 후 서비스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 지자체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연락처

구분	대표번호	홈페이지
서울	1588-4388	https://www.sisul.or.kr/open_content/calltaxi/
경기	1666-0420	https://ggsts.gg.go.kr/
강원	1577-2014	http://call.gwd.go.kr/
부산	1555-1114	http://www.duribal.co.kr/
대구	1577-6776	https://nadrihome.dpfc.or.kr/
인천	1577-0320 032-430-7000	https://www.intis.or.kr/
광주	1668-2222	http://gjts.com/
대전	1588-1668 042-612-1050	https://www.djcall.or.kr/
울산	052-292-8253	https://www.usdws.or.kr/
세종	1899-9042	http://nuricall.sctc.kr/
충북	1533-0220	http://chungbuk-th-back.essetel.co.kr/
충남	1644-5588	http://www.16445588.or.kr/
전북	063-227-0002	http://www.0632270002.com/
전남	1899-1110	www.doumcall.kr/
경북	1899-7770	http://www.brmcall.co.kr/
경남	1566-4488	http://www.15664488.co.kr/
제주	1899-6884	http://www.jejuhappycall.com/



✓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문의하세요.

04. 일상돌봄서비스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청년, 가족돌봄청년 등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재가 돌봄·가사, 병원동행, 심리지원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여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만 19~64세)
- 질병·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책임을 지고 있는 청년 (만 9~39세, 청소년 포함)
- 자립준비청년 또는 보호연장아동, 고립은둔자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 거동 불편 등의 사유로 직접 방문 불가할 경우 전화·우편·팩스 신청 가능

☑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 2) 개인정보동의서
- 3) 신분증
- 4) 주민등록등본
- 5) 진단서, 장기요양인정서, 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돌봄 필요성이 확인되는 증빙서류
- 6) 재직증명서 등 경제활동 및 학업 등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
 - * 대리신청할 경우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 서류 준비 전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기본서비스 :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일정 시간 내에서 재가 돌봄·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탄력적으로 제공
- 특화서비스 : 서비스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심리, 휴식, 교류 증진 등 일상의 부담을 경감하고 회복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
 - * 타 돌봄서비스(장기요양, 가사간병 등)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기본서비스는 이용 불가하고 특화서비스만 이용 가능
 - * 기본서비스는 30분만 이용은 불가, 1시간 이상부터 30분 단위 이용 가능

구분	서비스명	서비스 내용
재가돌봄·가사 서비스 (기본서비스)	▶재가돌봄	- 목욕 등 신체청결, 옷 갈아입기 등 신체 수발지원 및 건강지원
	▶가사	- 청소, 설거지 등 가정 내 일상생활을 위한 가정환경 마련
	▶일상지원	- 장보기, 은행 방문 등 외출 시 동행하여 이동 지원 및 업무보조 등 제공
특화 서비스	▶식사	-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식사 지원
	▶영양	-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식사지원 및 영양관리
	▶병원동행	-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에게 병원 이동 및 동행보조, 병원 접수·수납 등 지원
	▶심리지원	- 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심리지원
	▶휴식	- 돌봄 필요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의 돌봄 대상, 가족 대상으로 단기 시설보호 지원
	▶소셜 다이닝	- 생활에 필요한 요리를 배우고 함께 식사하는 기회를 통해 교류 및 사회참여 증진
	▶교류증진	- 지역주민과의 일상적 소통 및 교류 증진
	▶건강생활	- 중장년의 일상생활 건강 상담 및 생활운동 프로그램 지원
	▶신체건강 증진	- 청년의 근력향상, 체력증진 등 개인 맞춤형 운동지원
	▶간병 교육	- 간병·돌봄 등에 대한 교육 제공
▶독립생활 지원	- 청년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세요.

05.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이하 계층 중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한 자
 ※ 단독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거나 실제 생활을 함께 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선정 지양됨

- 1)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2)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내 발행된 진단서 첨부)
- 3) 희귀난치성 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
- 4)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법정보호세대)
- 5)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실제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포털 사이트에서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검색

☑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구분	서비스내용
신체수발 지원	목욕, 대소변, 옷 입기, 세면, 식사 등 보조
건강 지원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가사 지원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일상생활 지원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 서비스 이용에 본인부담금이 있나요?

제공시간	대상자	본인부담금
월 24시간 (A형)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면제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나형)	월 25,630원
월 27시간 (B형)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월 14,420원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나형)	월 28,840원
월 40시간 (C형)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면제

※ 1회 방문 시 서비스 제공시간은 최소 2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30분 단위로 증감 가능함



✓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세요.

06. 보건복지부 긴급돌봄 지원사업



질병, 부상,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사망, 입원 등) 등에 대응해 돌봄 공백을 신속히 보완해 국민의 돌봄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급성기 질환(일시적 수술 등), 중증 질환 및 부상 등 발생으로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워진 경우
- 병원에서 수술, 입원 치료 등을 마치고 퇴원 후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가족 등 돌볼 사람이 없는 경우
-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워 가족 등으로부터 돌봄을 받고 있었으나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사망, 가출, 입원, 감염, 구금, 실종 등)가 발생한 경우
-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등 유사 돌봄서비스를 신청하고 대기 중인 자로, 유사 돌봄서비스 대상자로 결정될 때까지 실질적으로 돌볼 사람이 없는 경우
- 기존에 보유한 만성질환, 노쇠 등 진행으로 신체기능 저하가 발생하고, 한시적 지원 필요성이 현장방문을 통해 확인된 경우
- * 암, 뇌졸중, 낙상, 중증 외상 등으로 급성기 치료를 마친 후 후유증 또는 회복기까지 요양이 필요해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자
- * '주 돌봄자'란 가정 내에서 대상자를 주로 돌보던 사람을 의미하며 반드시 가족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님
- * 유사 돌봄 서비스와 중복 지원 불가하고, 기존 돌봄서비스가 있는 경우 해당서비스 우선 연계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통해 신청
-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전화, 우편, 팩스로 신청

☑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신분증(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포함)
- 진단서, 입원(수술)확인서, 퇴원확인서, 사망진단서 등 돌봄이 필요한 사유가 확인되는 서류

☑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30일 이내 최대 72시간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하루 최대 8시간까지 이용 가능
- 방문목욕은 최대 4회

구분		서비스내용
기본돌봄 서비스	재가돌봄	- 목욕 등 신체청결 - 옷 갈아입히기 등 몸단장 지원 - 식사도움 - 체위변경 등 신체 수발지원 및 건강지원
	가사지원	- 청소 : 가구 내 방, 거실, 주방, 화장실 한정 청소 및 쓰레기 배출과 주거 공간 내부 정리 - 세탁 : 세탁 및 세탁물 수거(다림질 제외) - 식사준비 : 식재료 준비와 설거지, 밥하기, 기본 국반찬하기 등
	이동지원	- 장보기, 은행 방문 등 외출 시 동행하여 이동지원 및 업무 보조 등 제공 *서비스제공인력 개인차량 이용 불가
방문목욕 서비스		- 목욕 준비, 입원 시 이동 보조, 몸 씻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등이며 목욕 후 주변 정리까지를 포함

☑ 서비스 이용에 본인부담금이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존중위소득 160%초과자
면제	전액 본인부담

* 지역별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에 차등이 있으니 서비스지원 담당자에게 확인 후 서비스 이용을 권고 드립니다.



- ✓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세요.
- ✓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세요.

07.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상시 보호가 필요한 노인 가구 및 장애인 가구에 게이트웨이, 화재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화재, 질병 등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자동으로 신고하고 응급관리요원에게 알려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 노인 가구

- 주민등록상 거주자와 동거자 유무,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
- 65세 이상 노인 2인으로 구성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 가구 중 한명이 당뇨, 혈압, 뇌졸중 및 치매 등 질환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 전 세대원이 75세 이상인 경우
- 65세 이상 노인과 24세 이하 손·자녀로만 구성된 가구

나. 장애인 가구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지자체장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방문하여 신청
- 방문 신청이 어려울 경우 전화·우편·팩스 신청 가능

☑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신청서, 서비스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구분	세부내용
▶ 게이트웨이	- 게이트웨이는 119 응급호출, 센터, 통화, 취소 버튼으로 구성되어 있음. - 각 버튼을 누르면, 119 상황실로 자동신고, 저장된 지역센터 전화번호로 전화, 저장된 비상연락처 목록에서 전화걸기, 다른 버튼 사용에 대한 취소로 작동됨. - 그 외 라디오, 동영상 기능 제공 가능함.
▶ 활동량감지기	- 대상자 활동 유무를 감지하여 게이트웨이로 활동량 감지 정보 전송 - 장시간 활동량이 없을 경우 활동미감지 이벤트 정보를 게이트웨이로 전송
▶ 화재감지기	- 연기를 감지 할 경우 게이트웨이에 정보를 전송하여 119에 자동신고 - 화재감지 시 응급상황을 알리는 신호음 발생
▶ 출입문감지기	- 대상자 댁내 출입문을 개폐 여부를 감지함. 활동량감지를 통해 외출이나 재실 등 활동미감지 사유를 구분함.
▶ 응급호출기	- 응급버튼을 누르면 게이트웨이에 정보를 전송하여 119에 자동 신고 - 취소를 누르면 응급호출이 취소됨. - 댁내 화장실에 설치됨.
▶ 웨어러블 장비	- 대상자 심박수, 호흡수 등 건강 데이터 수집 - 댁내 응급상황 발생 시 게이트웨이를 활용하여 119 자동 신고 - 낙상 감지 및 위험 상황 실시간 알림



☑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세요.

08. 119 안심콜 서비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 고령자 및 독거노인 등에게 위급상황 발생 시 구급 대원이 질병 및 특성을 미리 알고 신속하게 출동하여 맞춤형으로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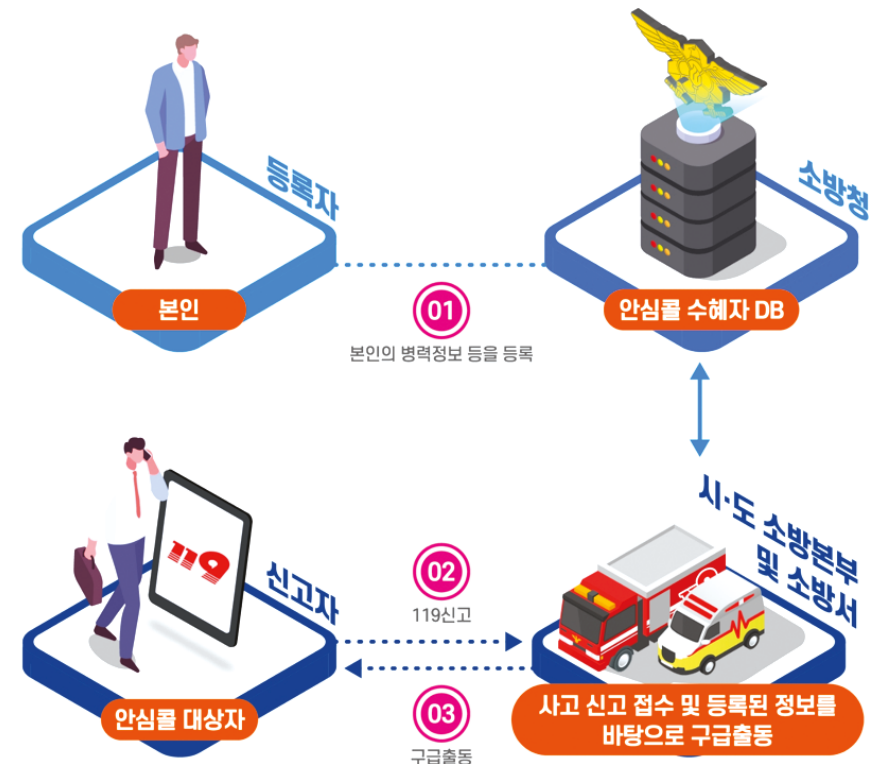
- 119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 통해 신청
 * 홈페이지 통해 신청 시 회원가입 필요함.



119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 접속
 (https://u119.nfa.go.kr)

안내에 따라
 개인정보, 병력, 복용 약물,
 보호자 연락처 등을 입력·신청

※ 본인 뿐만 아니라 보호자, 자녀, 사회복지사 등 대리인도 가입이 가능



* 이미지 출처 : 119안전신고센터(www.119.go.kr)

참고사항

- 보호자의 연락처를 사전 등록해 놓은 경우, 환자의 응급상황 발생 사실과 이송병원 정보가 보호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자동 전송됨.
- 인터넷을 통한 본인 또는 대리인(배우자, 자녀, 사회복지사 등)이 등록 가능함.
- 휴대전화 및 유선전화번호 모두 등록 가능하고, 등록된 전화번호로 119에 신고해야 사전 등록된 정보를 활용 가능함.
- 사전 등록된 개인정보는 긴급 구조활동에 참고하나 해당 정보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음.
- 병력,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변경되었을 시 본인 또는 대리인이 홈페이지 통해 등록정보 변경이 필요함.



소방청 119안전신고센터(044-205-7659)에 문의하세요.

01. 장애인 일자리 사업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 하여 국가가 미취업 장애인에게 장애 유형별 맞춤형 일자리를 개발, 보급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사회참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어떤 일자리가 있나요?

1) 일반형 일자리

미취업 장애인의 일반노동시장 취업을 위해 실무능력 습득을 지원하고 일정기간 동안의 소득을 보장하는 일자리로 전국 시·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공공기관 등에 배치되며 장애인복지행정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구분	기간	참여대상기준	근로시간		월 급여
전일제	12개월	만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	1~11월	주 40시간 (주5일/1일 8시간)	월 2,096,270원 (세전급여, 12월 단축근무 시 급여변동 될 수 있음)
			12월	주 37.5시간 (월-목/1일 8시간 금/1일 5.5시간)	
시간제			1~11월	주 20시간 (1일 4시간 이상)	월 1,048,270원 (세전급여, 12월 단축근무 시 급여변동 될 수 있음)
			12월	주 19시간 (1일 4시간 이상, 주 1회 4시간 미만 가능)	

* 4대보험 가입, 퇴직금 지급(1년 근무자)

2) 복지 일자리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유형별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제공하여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직업경험을 지원하는 일자리로 참여형일자리와 특수교육·복지연계형 일자리로 나뉩니다.

구분	참여대상기준	근로시간	월 급여
참여형	만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	주 14시간 (월 56시간)	월 561,680원 (산재·고용보험 가입)
특수교육 연계형	미취업 특수교육 전공과 학생 *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실습가능 시점부터 참여 가능		

3) 특화형 일자리

특화형 일자리는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업무,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합니다.



- 안마사파견사업: 안마사 자격을 지닌 미취업 시각장애인이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사업: 발달장애인을 요양보호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일자리에 배치하여 직무능력 습득 및 일자리 경험을 제공하는 일자리

구분	참여대상기준	근로시간		월 급여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만 18세 이상 미취업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에 의거한 안마사 자격을 인증 받은 자로서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년도 이후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	1~11월	주 25시간 (주5일/1일 5시간)	월 1,313,930원 (세전급여, 12월 단축근무 시 급여변동 될 수 있음)
		12월	주 23.5시간 (월-목/1일 5시간 금/1일 3.5시간)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만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 (발달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아인)	1~11월	주 25시간 (주5일/1일 5시간)	
		12월	주 23.5시간 (월-목/1일 5시간 금/1일 3.5시간)	

* 4대보험 가입, 퇴직금 지급(1년 근무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매년 11월~12월 전국 시·군·구 및 민간위탁 사업수행기관(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단체, 특수교육기관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장애인능력개발원	장애인 일자리 사업 안내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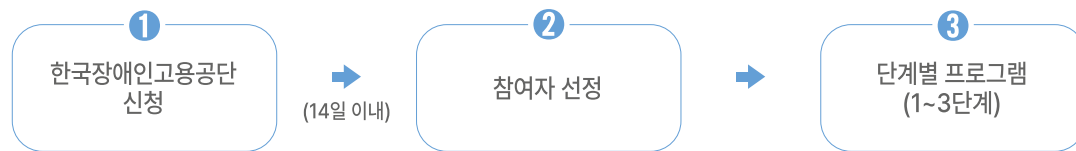
✓ 한국장애인개발원(02-3433-0668)에 문의 하세요.

02. 장애인 취업성공 패키지



장애인에게 성공적인 취업과 직업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단계별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적인 취업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취업을 희망하는 만18세 이상 69세 이하 장애인

- ※ 참여 제한
- 취업 의지가 없거나 직업훈련에만 관심 있는 경우
 - 고등학교, 대학(원) 재학 중인 경우
(단, 졸업예정자 및 학점은행제, 사이버대, 방송통신고, 방송통신대, 야간대학 재학생은 참여 가능)
 - 주 30시간(중증, 여성 주 35시간) 이상 고용보험(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포함) 근로자
 - 과거 취업 성공 패키지 참여한 경우(단, 중단일 1년 6개월, 기간만료(미취업)일 1년, 취(창)업일 1년 이후 참여 가능)
 - 외국인[체류자격 F-2(거주)-F-5(영주)-F-6(결혼이민)] 및 국적법에 따라 귀가허가 받은 자는 참여가능]

☑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단계	프로그램	지원
1단계	상담 및 취업활동 계획(1개월 이내)	- 개인별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참여수당 15만원 지급
2단계	취업역량 강화(12개월 이내)	- 지피지기 프로그램 수료시 5~10만원 지급 - 훈련참여수당 1일 18,000원(최대 284,000원)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최대 300만원)
3단계	고용안정 및 유지(6개월 이내)	-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지급(근속기간별 차등지급) *고용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 주 30시간(중증 15시간)이상 근로 시 지급

☑ 소속기관 주소 및 연락처

기관명	주소	전화
서울지역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11층	02-6320-7000
서울남부지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 6층	02-6004-1005
서울동부지사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89, 11층	02-2146-3500
서울북부지사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64, 2층	02-6312-5300
경기지역본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18, 4층	031-300-0906
경기북부지사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24, 3층	031-850-4500
경기동부지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8, 2층	031-600-0200
경기서부지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66, 교보빌딩 9층	031-500-2410
부산지역본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일로 181, 10층	051-640-9800
대구지역본부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 200, 13층	053-288-1500
광주지역본부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좌로 268, 20층	062-448-1199
대전지역본부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36, 13층	042-620-6200
인천지사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 1층	032-242-1004
울산지사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10층	052-226-1004
강원지사	강원도 원주시 호저로 47, 4층	033-737-6620
충북지사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3층	043-230-6400
충남지사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82, 3층	041-629-6000
전북지사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51, 11층	063-240-2400
전남지사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118, 7층	061-983-1800
경북지사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73, KB손해보험구미빌딩 6층	054-450-3000
경남동부지사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07, 6층	055-255-8006
제주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30, 6층	064-710-5010
일산직업 능력개발원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로 155	031-910-0800
부산직업 능력개발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산단5로 54	051-726-0321
대구직업 능력개발원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산남로 11	053-550-6000
대전직업 능력개발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로 70	042-366-5412
전남직업 능력개발원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학동로 546	061-956-8100
보조공학센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 15, A동 9층	02-6321-84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에 문의하세요.

03. 장애인 고용알선 지원사업

구직장애인의 상황과 능력에 적합한 사업체에 알선하고, 직장생활 적응과 경력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중증장애인지원고용



사업체 현장훈련을 거쳐 취업으로 연계하는 프로그램으로 훈련기간 동안에는 일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사업체 적응을 돕기 위하여 직무지도원을 배치합니다.


- 신청자격 및 요건
 - 중증장애인 혹은 고용지원 필요도 판정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근로자
- 지원내용
 - 훈련준비금(4만원) 및 훈련수당(1일 18,000원) 지급, 재해보험가입

2) 장애인 인턴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미취업 중증장애인과 만 50세 이상의 장년장애인, 발달장애인에게 사업체에서 인턴근무 경험을 제공하여 직무능력 및 직장적응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정규직 전환을 지원합니다.

- 신청자격
 - 중증장애인 중 취업에 현저히 어려움이 있는 특정 장애유형
 - 만 50세 이상 장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
 - 고용지원필요도 판정 검사 등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만 49세 이하 장애인
 - (발달)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중증장애인지원고용	장애인 인턴제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에 문의하세요.**

04.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희망하거나 필요로 하는 대상자의 직업 능력을 향상시켜 보다 나은 일자리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안정된 직업생활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15세 이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희망하거나 필요로 하며 소정의 입학절차를 통과한 장애인(단, 취업성공패키지는 만 18세 이상 69세 이하 1단계 이수자)
- 실업급여 수급자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훈련수당, 훈련장려금을 지원받고 있는 자는 지원 제외

☑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① 직업 훈련


구분	내용
직업능력개발원	융·복합훈련, 특화훈련, 훈련지원프로그램 운영
맞춤훈련	장애인 직무 능력 향상을 통한 취업기회 제공
디지털훈련	수준별 IT 훈련과정 운영
발달장애인훈련	발달장애인 개인별 특성에 따라 설계된 직업훈련

② 훈련수당 지급

구분		훈련생 1인당 지급기준	
훈련수당	훈련참여수당	월 20만원 한도 내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월 최대 284천원)	
	훈련장려금	교통비	월 5만원 (통학하는 경우)
		식비	월 6.6만원 또는 식사 제공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 단, 훈련수당은 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고용공단 산하 능력개발원에서 훈련받는 장애인
- 맞춤훈련센터 및 디지털훈련센터에서 훈련받는 장애인
- 발달장애인훈련센터에서 훈련받는 장애인
- 공공훈련기관(폴리텍)에서 훈련받는 장애인
- 민간훈련기관 공모를 통해 훈련비* 지원 및 장애인 훈련생에게 훈련수당 지급 (*훈련비는 직종별 훈련비용기준단가 등에 따라 지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에 문의하세요.**

05.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39세 이하 미취업(또는 이에 준하는 자) 청년
- 사업기간 동안 해당 지자체의 주민등록을 유지

☑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청년이 지역에서 취·창업 시 인건비, 직무교육, 자격증취득비 등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PART 1. 지역혁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경제와 청년이 함께 성장하도록 지역특화 일자리와 임금 지원 - 지역 기반 미래신산업, 지역혁신산업분야 중소기업, 법인, 지역향토기업 등에서 근무 - 2년 간 연 2,400만원 내외에서 임금 지원 및 직무역량교육 지원 - 3년차에 해당 사업장 정규직 유지 또는 지역 내 취·창업(3개월 내)할 경우 1년간 연 1,000만원 이내 인센티브 지원
PART 2-1. 상생기반대응형 (소멸위기지역 창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감소지역 청년의 신규창업 및 성장을 지원 - 2년 간 신규창업 및 성장지원 비용 지원 (1년 차 창업준비비용 1,500만원, 2년 차 창업성공 시 1,500만원 지원) - 2년차에 청년 신규 채용 시 인건비 연 2,400만원 추가 지원
PART 2-2. 상생기반대응형 (창업성장 플러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외 지역에서 창업 초기(지역 내 창업 7년 이내) 청년의 성장 및 정착을 지원 - 1년차에 1인당 연 1,500만원 지원 - 3년차에 청년 신규 채용 시 인건비 연 2,400만원 추가 지원
PART 3. 지역포용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공헌 분야 등에서 청년 직무경험 지원을 통해 안정적 지역 정착을 유도 - 지역특화 사회적 기업, 지역사회공헌 분야에 근무 - 1년 동안 2,250만원 내외 임금 지원 및 직무교육 지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 해당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별 선발 일정과 세부 사업내용이 상이하니 지자체에 문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자체	홈페이지	통합공고 플랫폼(공고페이지)
서울	www.seoul.go.kr	서울 홈페이지 > 서울소식 > 공고 > 채용시험
부산	www.busan.go.kr	부산 홈페이지 > 부산소식 > 공고 > 고시공고
대구	www.daegu.go.kr	대구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알림정보 > 고시공고
인천	www.incheon.go.kr	인천 홈페이지 > 일자리포털 > 참여소통 > 공지사항
광주	www.gwangju.go.kr	광주 홈페이지 > 시정소식 > 고시공고/입법예고
대전	www.daejeon.go.kr	대전 홈페이지 > 행정정보 > 시청자료실 > 공보(고시공고) > 공고
울산	www.ulsan.go.kr	울산 홈페이지 > 시정소식 > 고시공고
세종	www.sejong.go.kr	세종 홈페이지 > 행복도시세상 > 세종소식 > 공고/고시 > 일반공고/고시
경기	www.gg.go.kr	경기 홈페이지 > 뉴스 > 공고·입법예고 > 고시·공고
강원	state.gwd.go.kr	강원 홈페이지 > 도정마당 > 공고/고시
충북	www.chungbuk.go.kr	충북 홈페이지 > 도정소식 > 고시/공고
충남	www.chungnam.go.kr	충남 홈페이지 > 행정 > 도정공고 > 공고/고시
전북	www.jeonbuk.go.kr	전북 홈페이지 > 알림마당 > 도정소식 > 공고/고시
전남	www.jeonnam.go.kr	전남 홈페이지 > 도정소식 > 고시공고
경북	www.gb.go.kr	경북 홈페이지 > 도정소식 > 알림마당
경남	www.gyeongnam.go.kr	경남 홈페이지 > 경남소식 > 공고 > 고시공고
제주	www.jeju.go.kr	제주 홈페이지 > 도정뉴스 > 도정소식 > 입법·고시·공고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 해당 공고페이지에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검색하세요.



✓ 주민등록 관할 지자체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공고문 내 문의처로 문의하세요.

01. 만성콩팥병(만성신장병)이란 어떤 상태를 말하나요?

만성콩팥병은 혈액검사, 소변검사, 영상검사 또는 조직검사에서 콩팥이상을 보이는 소견이 3개월 이상 오래 지속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혈액 검사 중 혈청 크레아티닌 검사 수치로 콩팥기능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성콩팥병의 단계에 따라 어떤 치료를 하나요?

만성콩팥병의 단계	사구체 여과율 (콩팥 기능)	필요한 치료
정상/1단계 (정상 또는 증가된 사구체 여과율)	분당 90ml이상	· 원인 질환의 진단 및 치료
2단계 (경도의 사구체 여과율 감소)	분당 60ml이상 89ml이하	· 생활습관 개선 · 심혈관계 합병증 예방
3단계 (중등도의 사구체 여과율 감소)	분당 30ml이상 59ml이하	· 적절한 혈압/혈당 조절 등 기저질환관리 · 만성콩팥병에 대한 교육 / 생활습관 개선
4단계 (중증의 사구체 여과율 감소)	분당 15ml이상 29ml이하	· 빈혈과 고칼륨혈증 치료 · 신대체 요법 (혈액투석, 복막투석, 신장이식) 준비 · 생활습관 개선 유지
5단계 (말기신부전)	분당 15ml미만	· 신대체 요법 (혈액투석, 복막투석, 신장이식) 선택 · 생활습관 개선 유지

치료와 함께해야 하는 생활습관 관리에는 무엇이 있나요?

▶ 체중관리

과체중이거나 비만인 경우 만성콩팥병의 대표 원인인 당뇨병, 고혈압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비만 환자의 체중 감소는 혈압조절, 단백뇨 감소되어 콩팥 기능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 혈당 조절

공복혈당을 기준으로 70~130 mg/dL을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 혈압 조절

단백뇨가 거의 없는 경우 140/90 mmHg 이하이지만 단백뇨가 있는 경우 130/80 mmHg 이하로 유지하도록 권고합니다.

▶ 운동

매주 3일 이상, 하루 30분 이상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금연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켜 콩팥으로 가는 혈액의 양을 줄이고 고혈압을 유도하여 콩팥기능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담배는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 금주

음주 역시 콩팥에 나쁜 영향을 미치므로 가급적 금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예방주사

만성콩팥병 환자는 면역계의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방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 복약

적절한 약물복용을 위해 콩팥 전문의와 상담 후 약물을 복용해야 합니다.

참고 문헌: 만성콩팥 지침서, 만성콩팥병의 평가 및 분류, 대한신장학회 1:S2-S13, 2009
일반인을 위한 만성콩팥병 바로알기, 2020

02. 연명의료결정제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하여 존중받는 임종과정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연명의료란?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연명의료 유보란?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연명의료를 처음부터 시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 연명의료 중단이란?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이미 시행 중인 연명의료를 중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습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 19세 이상 건강한 성인은 연명의료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미리 작성 할 수 있습니다.

▷ 연명의료계획서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말기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에 관한 의사를 담당의사와 상의하여 연명의료계획서로 남겨 놓을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대 상	19세 이상의 성인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작 성 자	본인이 직접 작성	환자의 요청에 의해 담당의사가 작성
필요서류	작성자의 신분증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서(의료진 작성)
신청기관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본부, 지사) 및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설치·등록된 의료기관
방문 전 기관에 사전문의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했다라도, 실제로 연명의료를 받지 않으려면 임종과정 환자 판단, 환자 또는 가족의 의사결정 확인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의료진과 상의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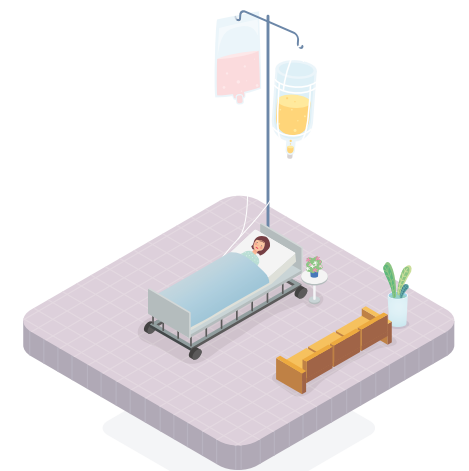
* 이미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라 할지라도 작성자는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 할 수 있습니다.

말기 환자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 되어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에게 진단을 받은 환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회생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인이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을 받은 환자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1855-0075)으로 문의하세요.

03. 도움이 되는 사이트 정보

구분	단체 및 기관명	플랫폼	사이트	QR	
의료적 정보	한림대학교 의료원	홈페이지	https://www.hallym.or.kr/		
		유튜브	https://www.youtube.com/@HUMC		
		씩씩TV 유튜브	https://www.youtube.com/@sickseekTV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humc_health/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GlobalHallym		
		블로그	https://blog.naver.com/humc_health		
	대한 신장학회	홈페이지	https://ksn.or.kr/general/		
		유튜브	https://www.youtube.com/@kidney_KSN		
		대한투석협회		http://www.e-kda.org/	
		대한이식학회		https://www.mykst.org/	

구분	단체 및 기관명	사이트	QR
복지 정보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	
	보건복지부 복지포털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https://longtermcare.or.kr/	
	국민연금공단	https://www.nps.or.kr/	
	한국장애인개발원	https://www.koddi.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https://www.kead.or.kr/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https://www.lst.go.kr/main/main.do	

